사 업 명

(1) 에너지바우처(5146-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에너지및자원				110	115
명칭	사업특별회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투자계정	산업·중소기업	에너지및자원
6/3	가급득결의계				및에너지	개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46	301
명칭	에너지자원정책	에너지복지지원	에너지바우처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x1.7.	계소	ol. =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7	20分	계속	[판뇨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박은표	이상은	이수연								
바우처		에너지효율지원팀	044)203-5160	044)203-5161	044)203-5162								
	사업시행주체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복지실	권용출 팀장	052)920-0541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연탄쿠폰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양정식	박상욱									
내역사업		석탄산업과	044)203-5260	044)203-5261									
	사업시행주체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신업지원실	이정현 과장	033)736-5743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증감	
71 日 8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에너지바우처	230,556	190,963	685,606	685,606	494,643	259.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3.12월	[말)			
	예산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이월액 외	이월	불용	2024 예산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에 선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_	-11-12
○ 기능별 분류(합계)	230,556	230,556	230,556 [218,062]	-	-	190,963	323,996	323,996 [279,508]	323,996	323,996 [279,508]	-	-	685,606
· 하절기바우처	47,143	47,143	47,143 [44,301]	_	_	36,851	48,805	48,805 [42,335]	48,805	48,805 [42,335]	-	-	60,950
• 동절기바우처	156,267	156,267	156,267 [147,975]	-	-	129,656	171,337	171,337 [158,869]	171,337	171,337 [158,869]	-	-	600,521
• 연탄쿠폰	23,600	23,600	23,600 [22,304]	-	-	21,712	23,854	23,854 [15,842]	23,854	23,854 [15,842]	-	-	21,240
• 등유바우처	1,674	1,674	1,674 [1,674]	-	-	1,395	1,551	1,551 [522]	1,551	1,551 [522]	-	-	1,023
• 사업운영비	1,872	1,872	1,872 [1,808]	-	-	1,349	3,485	3,485 [1,086]	3,485	3,485 [1,086]	-	-	1,872
· 등유· LPG지원금	-	-	_	-	-	_	74,964	74,964 [60,854]	74,964	74,964 [60,854]	-	-	-
○ 비목별 분류(합계)	230,556	230,556	230,556 [218,062]			190,963	323,996	323,996 [279,508]	323,996	323,996 [279,508]	-	-	685,606
・민간경상보조 (320-01)	230,556	230,556	230,556 [218,042]			190,963	323,996	323,996 [279,508]	323,996	[2/9,508]	-	-	685,60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30,556	230,556	230,556 [218,062]	-	-	190,963	323,996	323,996 [279,508]	323,996	[2/9,508]	-	-	685,606
• 하절기바우처	47,143	47,143	47,143 [44,301]	-	-	36,851	48,805	48,805 [42,335]	48,805	[42,335]	-	-	60,950
- 민간경상보조 (320-01)	47,143	47,143	47,143 [44,301]	-	-	36,851	48,805	48,805 [42,335]	48,805	[42,335]	-	-	60,950
• 동절기바우처	156,267	156,267	156,267 [147,975]	-	-	129,656	171,337	171,337 [158,869]	171,337	171,337 [158,869]	-	-	600,521
- 민간경상보조 (320-01)	156,267	156,267	156,267 [147,975]	-	-	129,656	171,337	171,337 [158,869]	171,337	171,337 [158,869]	-	-	600,521
• 연탄쿠폰	23,600	23,600	23,600 [22,304]	-	-	21,712	23,854	23,854 [15,842]	23,854	23,854 [15,842]	-	-	21,240

						2023(′	23.12월	[말)					
	예산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이월액 외	이월	불용	2024
	에간적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산
- 민간경상보조 (320-01)	23,600	23,600	23,600 [22,304]	-	-	21,712	23,854	23,854 [15,842]	23,854	23,854 [15,842]	-	-	21,240
• 등유바우처	1,674	1,674	1,674 [1,674]	-	-	1,395	1,551	1,551 [522]	1,551	1,551 [522]	-	-	1,023
- 민간경상보조 (320-01)	1,674	1,674	1,674 [1,674]	-	-	1,395	1,551	1,551 [522]	1,551	1,551 [522]	-	-	1,023
• 사업운영비	1,872	1,872	1,872 [1,808]	-	-	1,349	3,485	3,485 [1,086]	3,485	3,485 [1,086]	-	-	1,872
- 민간경상보조 (320-01)	1,872	1,872	1,872 [1,808]	-	-	1,349	3,485	3,485 [1,086]	3,485	3,485 [1,086]	-	-	1,872
・등유·LPG지원금	-	-	-	-	-	-	74,964	74,964 [60,854]	74,964	74,964 [60,854]	-	-	-
- 민간경상보조 (320-01)	-	-	-	-	-	-	74,964	74,964 [60,854]	74,964	74,964 [60,854]	-	-	-

^{*} 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당해연도 7월~익년도 4월)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 예산은 바우처 사용(~'24.4월) 등 지원 완료 후 최종 정산 예정

나. 사업설명자료

- 1) 사업목적·내용 :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 계층에게 전기·가스·지역난방 등 에너지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 (하절기바우처) 하절기 냉방 등을 위한 전기요금을 가상카드 형태로 지원
 - (동절기바우처) 동절기 난방 등을 위한 연탄, 등유, LPG,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연료비를 가상카드, 실물카드 형태로 지원
 - (연탄쿠폰)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대상 가구에 연탄 구입 비용을 연탄쿠폰 형태로 지원
 - (등유바우처) 등유보일러를 사용하는 대상 가구에 동절기 난방을 위한 난방용 등유 구입비용을 실물카드 형태로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에너지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법 제2조

에너지법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에너지법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에너지바우처 도입이 18대 정부 국정과제(43번)로 포함되어 발표('13.5)
- 에너지바우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에너지법 · 에특회계법 일부 개정 및 시행('15.7)
- 사회보장위원회(총리 주재)에서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계획 확정('15.8)
- 2015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15.11~'16.1월 신청·접수, '15.12~'16.3월 사용)
- * '15년 바우처 사용에 제한을 받은 대상자에게 환급형바우처 신청('16.5월)·지급('16.6월)
- 2016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16.11~'17.1월 신청·접수, '16.12~'17.4월 사용)
- 정부 국정과제(37번*)에 포함('17.7)
 - * (에너지바우처) '18년에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중증희귀질환자 세대 추가 등 에너지 소외계층 복지 지원 확대
- 2017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17.10~'18.1월 신청·접수, '17.11~'18.5월 사용)
- 2018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대상에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세대 추가('18.6)
- 2018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18.10~'19.1월 신청·접수, '18.11~'19.5월 사용)
- 2019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대상에 한부모 및 소년소녀가정세대 추가('19.7)
- 2019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19.5~'19.9월 신청·접수, '19.7~'20.4월 사용)
- 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20.5~'20.12월 신청·접수, '20.7~'21.4월 사용)
-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21.5~'21.12월 신청·접수, '21.7~'22.4월 사용)
- 대통령직인수위「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 발표('22.4)

- * (따뜻한 에너지 전환)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필수전력(年 2,500kWh 이상) 지원
-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22.5~'23.2월 신청·접수, '22.7~'23.4월 사용)
-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필수 에너지복지 확대* 발표('22.7)
-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를 통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추진
-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23.5~'23.12월 신청·접수, '23.7~'24.4월 사용)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67,517	143,605	230,556	323,996	685,606

- 기타 : '24년 대상가구 115.0만 세대에 평균 36.7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 추진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 사업 수혜자

- · (동·하절기바우처)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세대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소년소녀가정 포함 세대
- ·(연탄쿠폰) 연탄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소외계층
- · (등유바우처) 등유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중위소득 40%이하) 수급세대 중, 한부모· 소년소녀가정세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하절기바우처	보조	한국에너지공단	60,950	100	보조금법 제9조
동절기바우처	보조	한국에너지공단	600,521	100	보조금법 제9조
연탄쿠폰	보조	한국광해광업공단	21,240	100	보조금법 제9조
등유바우처	보조	한국에너지공단	1,023	100	보조금법 제9조
사업운영비	보조	한국에너지공단	1,872	100	보조금법 제9조

3) '2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① 하절기바우처 : ('23) 36,851백만원 → ('24) 60,950백만원(+24,099백만원)
 - * 지원대상 확대(생계·의료→생계·의료·주거·교육)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증액
 - (산출) 85.7만세대 x 4.3만원('23년) → 115.0만세대 × 5.3만원('24년)
- ② 동절기바우처: ('23) 129,656백만원 → ('24) 600,521백만원(+470,865백만원)
 - * 지원대상 증가와 난방비 인상에 따른 단가 인상 등 지원규모 확대를 고려한 증액
 - (산출) 85.3만 세대 x 15.2만원('23년) → ① '23년 동절기 지원확대 : 113.1만 세대 x 30.4만원 x 70%, ② '24년 동절기 지원 : 114.6만 세대 x 31.4만원('24년)
- ③ 연탄쿠폰: ('23) 21,712백만원 → ('24) 21,240백만원(△472백만원)
 - * 연탄 소비가구 감소 추세에 따른 감액
 - (산출) 4.5만 세대 x 472,000원 = 21,240백만원
- ④ 등유바우처 : ('23) 1,395백만원 → ('24) 1,023백만원(△372백만원)
 - * 등유 소비가구 감소 추세에 따른 감액
 - (산출) 0.33만 세대 x 310,000원 = 1,023백만원
- ⑤ 사업운영비: ('23) 1,349백만원 → ('24) 1,872백만원(+523백만원)
 - * 대상자 확대 등에 따른 홍보, 시스템 고도화, 콜센터 운영 비용 증액
 - (산출) 에너지복지 홍보(448백만원), 시스템 고도화(705백만원), 콜센터 운영(502.7백만원), 패널조사 (131.7백만원), 전달체계 구축(34.6백만원), 주택관리공단 운영지원(50백만원)
- ㅇ 2023년도 예산 및 2024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3년 예산		′24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90,963	○ 민간경상보조(320-01): 190,963백만원 가. 하절기바우처 (36,851백만원)	685,606	○ 민간경상보조(320-01): 685,606백만원 가. 하절기바우처 (60,950백만원) • 115.0만 세대 × 5.3만원 × 100% = 60,950백만원 나. 동절기바우처 (600,521백만원) • ('23확대) 113.1만 세대 × 30.4만원 × 70% = 240,677백만원 • ('24지원) 114.6만 세대 × 31.4만원 = 359,844백만원 다. 연탄쿠폰 (21,240백만원) • 4.5만 세대 × 47.2만원 = 21,240백만원 라. 등유바우처 (1,023백만원) • 0.33만 세대 × 31만원 = 1,023백만원 마. 사업운영비 (1,872백만원) • 에너지복지 홍보: 448백만원 • 시스템 고도화 : 705백만원 • 콜센터 운영 : 502.7백만원 • 패널조사 : 131.7백만원 • 에너지바우처 전달체계 구축 : 34.6백만원 • 주택관리공단 운영지원 : 5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4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	′21	′22	′23	′24	'2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에너지바우처	목표	65.6	81.7	112.3	108.2	109.7	'24년 대상세대수	차세대	
지원세대수	실적	66.1	77.7	113.3	-	-	(115만세대)× 최근		지자체 등 취합
(단위: 만세대)	달성도	100.7%	95.1%	100.9%	-	-	5개년 발급률 기중평균(95.4%)	지원세대수 취합·추출	
에너지바우처	목표	81.5	82.9	83.3	83.9	84.5	최근 3년('20-'22)	리커트 5점 척도	
수급자 만족도	실적	82.1	82.9	83.3	-	-	지원 실적의	측정 후 100점	대상세대
(단위: 점)	달성도	100.7%	100.0%	100.0%	-	_	평균 증가율 반영	만점으로 환산	설문조사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2020	- 사회배려계층 하계누진부담완화 사업 시행(344만 세대 지원) - 외국인을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에 포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완료('20.9월)
2021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세대원에 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자인 외국인 포함 -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수별 지급구간 확대(3단계→4단계)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8.2%인상(9천원↑, 동절기 평균 지원금액 10.9만원→11.8만원, '21.12월)
2022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를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완료('22.5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더위·추위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더위·추위민감계층까지 한시적 확대('22.5월 2차추경)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4.5만원 인상(하절기 평균 0.9만원→4만원, 동절기 평균 11.8만원→13.2만원, '22.5월 2차추경)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1.3만원 인상(동절기 평균 지원금액 13.2만원→14.5만원, '22.10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강화를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총 15.9만원(0.7만원 ('23.1월), 15.2만원('23.2월)) 한시적 인상(14.5만원→30.4만원)
2023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더위·추위민감계층까지 영구적 확대('23.5월)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0.3만원 인상(하절기 평균 4만원→4.3만원)

③ 향후('24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저소득층의 적정 수준 에너지 접근성이 높아지고,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약 115만 세대, 세대당 평균 36.7만원 내외)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예비타당성 조사

ㅇ 보고서명 :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2014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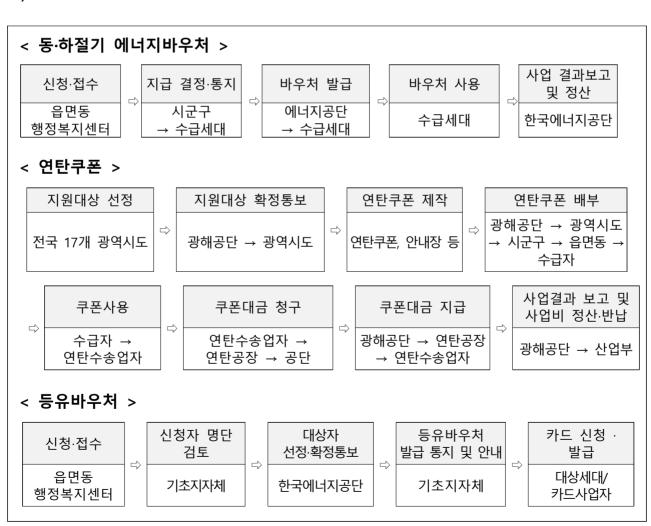
○ 조사기관 : KDI(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ㅇ 조사일자 : 2014. 08월

○ 조사결과 : AHP 평가 결과, B/C ratio가 0.539로 사업시행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2	′23	′24	′25	′26	′27
'22~'26	230,556	185,739	232,427	304,986	418,402	
'23~'27		190,963	685,606	441,694	457,467	474,48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21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 저소득층의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를 하절기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것
 - 희망세대 대상으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 일부를 하절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하였음('22.5월)

□ '21년 결산 지적사항

- o 수급자 변경 등으로 예산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여 선정기준 등의 변경계획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지자체와 면밀히 소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
 - 현재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소통 및 정보공유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계획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지원대상 변동 등이 예산편성시 신속히 반영되도록 할 계획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작염 및 한파 등 기후변화와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지속적 지원단가 현실화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재정사업자율평가('22년) : 보통(78.1점)

ㅇ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21년) : 지속 지원(87.8점)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본예산	예산액 추경 중감액	추경(A)		이·전 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 <i>J</i> B)	다 음연 도 이월액	불용액
2020	167,517	_	167,517	_	_	_	167,517	157,265	93.9	93.9	_	10,252
2021	113,909	21,796	135,705	-	7,900	_	143,605	143,605	105.8	100.0	_	_
2022	138,939	91,617	230,556	-	-	_	230,556	230,556	100.0	100.0	_	-
2023	190,963	-	190,963	-	-	133,033	323,996	323,996	169.7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구분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교부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본예산	추경(A)	Ήማቸ	业十号	이월액	현액	(B)	이끌액	돌중국	(B/A)	
2020	167,517	167,517	157,265	157,265	_	157,265	139,128	_	10,252	83.1	
2021	113,909	135,705	143,605	143,605	_	143,605	104,664	_	-	72.9	
2022	138,939	230,556	230,556	230,556	-	230,556	218,062	-	-	94.6	
2023. 12월기준	190,963	190,963	323,996	323,996	_	323,996	279,508	-	-	86.3	

* 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당해연도 7월~익년도 4월)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 예산은 바우처 사용(~'24.4월) 등 지원 완료 후 최종 정산 예정

2) 주요 결산사항

□ 2020년~2023년 결산사항

2020	- 불용 사유 : '20년 하절기 이상기온에 따른 전기사용량 하락으로,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할인액 감소
2021	- 이·전용 등 사유 : 코로나19 지속 및 유가상승 상황을 감안하여 소상공인전기요금한시지원 사업의 집행잔액 7,900백만원을 전용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8.2%인상에 활용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동절기 에너지이용 부담을 완화(제48차 비상경제중대본, '21.11월)
2022	- 추경 편성 사유 : 기후변화 심화 및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냉·난방 등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2년 2차추경을 통해 91,617백만원을 증액하여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인상
2023	- 예비비 편성 사유 :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특별대책('23.1.26, 2.15.)에 따른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예비비 100,000백만원 배정을 통한 동절기 지원단가 2배 인상(15.2—80.4만원) 지원

- □ 2023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 2023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예비비 배정 사유(날짜)
동절기바우처	민간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133,033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특별대책에 따른 동절기 지원단가 2배 인상 지원 ('23.2.23./10.25.)
	합 계		133,033	-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